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김상헌 의원 외 9명)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
----------	-----

발의연월일 : 2019. 4. 12.

발 의 자 : 김상헌·김시환·박승직
오세혁·한창화·조주홍
김진욱·윤창욱·정영길
박용선(10명)

찬 성 자 : -명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이 폐지(2017. 3. 30)되고 「항공사업법」이 제정·시행(2017. 3. 30) 됨에 따라 근거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2. 주요내용

- 가. 인용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법령 조항 정비와 법에서 정한 용어의 정비(안 제1조)
- 나.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서에 교부신청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추가(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발체)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붙임
- 규제심사 : 붙임
- 비용추계서 : 붙임
- 부패영향평가 : 붙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붙임

7. 참고사항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를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중 “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대상) 중 “항공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이하“항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중 “교부 받고자 하는”을 “교부받으려는”으로 수정하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수정하고, 제1호의 2에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출 근거”를 신설한다.

제10조는 삭제 한다.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 라 한다)</u> 가 경상북도 지역 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기를 취항하므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여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 ----- ----- -----
제2조 (재정지원 대상)재정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u>항공사업자</u> 에 한한다.	제2조 (재정지원 대상) ----- ----- -----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 라 한다)-----
제7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을 <u>교부 받고자 하는</u>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 <u>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u> <u>< 신 설 ></u> 2. <u>(생 략)</u> 3. <u>(생 략)</u> 4. <u>(생 략)</u> 5. <u>(생 략)</u> 6. <u>(생 략)</u>	제7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 ----- <u>교부받으려는</u> ----- ----- ----- ----- 1.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 1의2.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에 대한산출 근거 2. <u>(현행과 같음)</u> 3. <u>(현행과 같음)</u> 4. <u>(현행과 같음)</u> 5. <u>(현행과 같음)</u> 6. <u>(현행과 같음)</u>

현행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항공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신청금액	일금 (₩)			
산출내역				
운항노선				
여객운임		운항기종및좌석수		
운항기간		운항회수		
탑승현황	공급좌석수			
	탑승객수			
경상북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기 재정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2.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 3.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수 4. 운항사실기록부 5.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개정안

(삭제)

별지 서식

(별지 서식)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항공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신청금액	일금 원(금)			
산출내역				
운항노선				
여객운임		운항기종및좌석수		
운항기간		운항회수		
탑승현황	공급좌석수			
	탑승객수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출 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관 련 법 령 발 체

□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항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조 례 명: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 · 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도로철도 공 항 과	제1조	<개정문 전체 수정 필요> 항공운송사업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 라 한다)가 =>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제7조	<문장 수정 및 개정문 수정 필요> 교부 받고자 하는 => 교부받으려는 제1호 수정 필요(별지 서식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으로 표현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서식 제2호 신설을 제1호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되, 다음과 같이 표현 수정 필요(제1호와 표현 통일 필요) => 1의2.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출 근거
	제10조	보조금의 집행은 당연히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조 제목을 준용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없는바, 현행 제10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별지 제1호 서식	<개정문 및 문장 수정 필요> 개정문: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 제7조에 따라 서식 첨부서류를 제7조 각 호의 순서와 표현 그대로 규정해야 함.(※ 별지 서식을 조례안 바로 다음장에 삽입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구 열
입안주무부서	의원발의	통 보 (조 치) 일	2019. 4. 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 요인 없음.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
			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X	① 구체적·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주관적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4 해당부서 검토의견 (도로철도공항과)

□ 조례명 : 경상북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건설도시국 도로철도공항과		검토의견 없음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상위 법령 개정으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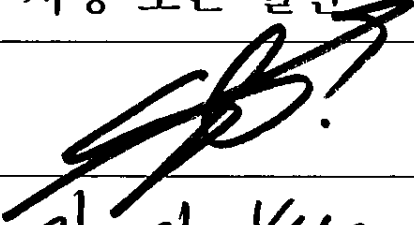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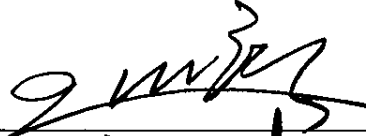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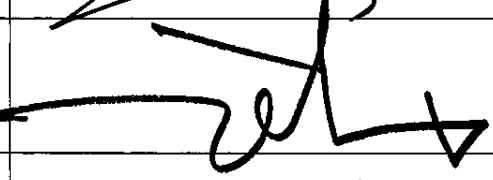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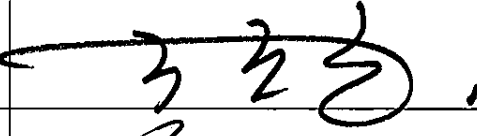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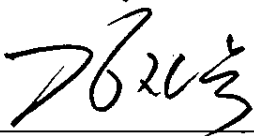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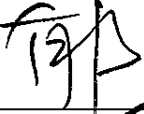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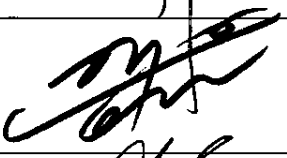
- 본 개정안은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의 개정과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서에 산출근거를 추가한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미첨부 대상에 해당됨.

4. 작성자

- 도로철도공항과 지방시설주사보 김창욱 (054-880-8842)

발 의 의 원 서 명 명 부

(제명 : 경상북도지역공항이용항공운송사업자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김 상 현		
김 시 환	김 시 환	
박 동 진		
유 세 혁		
한 장 현		
조 주 흥		
김 전 호		
유 창 호		
정 영 철		
백 동 진		